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태열 (외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부담금관리기본법」에 의거,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대상 및 모금액을 조정하고자 한다.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[별표 1] 모금액

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(10년, 5년) 모금액을 현행 각 15,000원과 12,000원에서 3,000원 감축하여 복수여권 10년은 12,000원, 복수여권 5년은 9,000원으로 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자증명서 모금은 폐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한국국제교류재단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령안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1항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모금의 대상	모금액		모금의 대상	모금액	
	국내	국외		국내	국외
1. 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자			1.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		
가. 유효기간 10년: 18세 이상인 자	15,000원	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	가. 유효기간 10년: 18세 이상인 자	12,000원	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
나. 유효기간 5년: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	12,000원	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	나.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	9,000원	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
2.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	5,000원	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			
3.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	2,000원	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8104